

수산물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22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최근 어가 인구 동향¹⁾을 살펴보면, 전체 어가 인구가 2019년 11만 3,900명에서 2023년 8만 7,100명으로 감소하고, 연령별 어가인구 역시 60대 이상이 65.2%로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²⁾, 어촌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청년에 대한 지원 등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임.

그런데,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현행법”이라 함)은 교육훈련 대상과 관련하여 수산업인, 어촌청소년, 어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어촌청년’은 이러한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어촌청년’이 영어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어촌청년³⁾을 영어기술 교육훈련 사업의 대상에 포함시

1)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23년 기준), 2024.4.

2)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귀어가구는 9,888개 어가(1만 2,876명)로 연 평균 988어가 1287명이 귀어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어가인구는 연 평균 5,653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켜 어촌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어촌청년을 영어기술 교육훈련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어촌청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8. 기타 사항

없음

3) 관련 입법례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년어업인을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인·어촌청소년·어촌여성”을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 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u>수산업인 · 어촌청소년 · 어촌여성</u>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 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 · 라.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하는 ----- -----. 가. (현행과 같음) 나. <u>수산업인, 어촌 청소년 · 청년 · 여성</u> ----- ----- ----- -----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